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21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이장섭·김영배·박광온

신정훈 · 유정주 · 이병훈

이학영 · 임호선 · 전재수

한병도 · 홍익표 의원

(11일)

제안이유

현행 「상표법」제127조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심판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안 제1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1)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절차 생략에 의한

신속하고 경제적인 심판처리를 도모함.

- 2) 다만 청구인에게 직권보정 사항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절차 권을 보장함.
- 3) 심판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 규정을 마련함.

법률 제 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 정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	
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보정할 사항이</u>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
	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
	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
	보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u><신 설></u>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
	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사항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
	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사항은 처음부터 없었
	던 것으로 본다.
<u><신 설></u>	⑦ 제1항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본다.